

## 2024년 저소득정책 변화와 경기도 시사점

### 목차

- I. 2024년 저소득정책 변화
- II. 변화된 정책과 경기도의 영향
- III. 정책제언

### 2024년 중앙정부 저소득정책 주요변화는 대상자 확대

- ▶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%→32%,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%→48%로 인상
  -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은 환경변화에 맞춰 코로나19를 위기사유에서 삭제하고 전세사기를 새롭게 포함
  -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『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』을 통해 제시된 ‘약자부터 두터운 복지’라는 주요 전략에 따른 정책변화
- ▶ 그러나 대상자 확대, 보장성 강화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짐
  - 의료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도 제한적으로만 이뤄졌으며,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보장성이 낮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, 교육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

### 사각지대는 감소하지만 경기도의 재정 및 인력부담 증대

- ▶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경기도 내 비수급 빈곤가구가 최소 88.9천 명에서 최대 103.6천 명 감소할 것으로 보임
- ▶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는 사각지대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,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최대 335.8억원으로 나타나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및 행정적 부담이 예상됨
  - 2024년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288억 원~335.7억 원, 시군은 143.5억 원~167.3억 원으로 나타남
  -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적정 복지대상자수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증가로 필요한 사회복지공무원은 177명~206명으로 나타남
- ▶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의 변화보다는 코로나19의 후폭풍, 고금리 등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위기가구 증대가 예상됨

### 정책제언

- ▶ 비수급빈곤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지원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고,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정책제언 필요
- ▶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보장성 강화와 유연한 제도운영 필요



ISSN 2982-5547

# I. 2024년 저소득 정책 변화

‘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
 주요 변화는  
 생계급여 32%,  
 주거급여 48%로  
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

##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

- ▶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도입된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로서 자산조사(소득 및 재산조사)를 거쳐 수급가구를 선정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임
  -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로 변경되면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로 나뉘서 운영됨
- ▶ 2023년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2024년~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화를 보면,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, 재가의료급여 확대, 급여 보장성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음
  -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발전을 위한 중기계획인 「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」이 발표되며,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2023년 11월 발표됨

〈표 1〉 2023년 기준 3년 후 달라지는 모습

| 분야                | 추진 과제            | 2023년 현재   | 2026년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|
| 급여 보장 수준 강화       | 국민 생활의 최저수준 향상   | ·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%<br>· 생계급여 수급자수 159.3만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생계급여 선정기준 '24년 32%로 상향<br>* 향후 35%까지 단계적 상향<br>· 생계급여 수급자수 180.7만 명(+21.4만 명(+α)) |
|                   | 필수건강 투자 확대       | ·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(73개 시군구)<br>· 과다 의료이용 관리 중심 사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(228개 시군구)<br>· 건강관리를 포함한 포괄적 사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최저주거 보장 수준 제고    | ·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의 75% 지원<br>·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<br>* 장애인 최대 380만 원, 고령자 50만 원 | · 기준임대료 현실화<br>· 주거취약계층 편의시설 설치지원 확대<br>* 재해취약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    | · 최저교육비의 90% 지원<br>* (초) 41.5만 원 (중) 58.9만 원 (고) 65.4만 원                   | ·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<br>* '24년 최저교육비 100% 달성   |
| 빈곤 시각 지대 적극 해소    |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| ·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2.9%   | ·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3.0%(+5만 명(+α))   |
|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   | · 자동차 재산<br>▲ 소득환산율 월 100%<br>▲ 예외적으로 4.17% 적용<br>▲ 생업용 50% 재산가액 산정        | · 자동차 재산<br>▲ 소득환산율 인하<br>▲ 4.17% 적용 자동차 확대 (다인·다차녀, 도서벽지 등)<br>▲ 생업용 재산가액 산정 제외    |
|                   |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    | ·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월 1.04%   | ·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  |
|                   |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    | ·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%<br>· 주거급여 수급자수 233.3만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주거급여 선정기준 '24년 48%로 상향<br>* 향후 50%까지 단계적 상향<br>· 주거급여 수급자수 252.8만 명(+19.5만 명)     |
|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적극 지원 |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 강화   | · 24세 이하 청년 근로·사업소득 추가공제<br>· 공제율 30% 일괄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30세 미만 청년 근로·사업소득 추가공제<br>· 노동시장 참여 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     | · 자활근로 참여자 5.9만 명('22년)<br>· 자활 성공률 24.3%('22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<br>· 자활 성공률 27%   |
|                   | 자산형성 지원          | · 자활기업 2년 유지율 81.8%('22년)  | · 자활기업 2년 유지율 85%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· 자산형성 수혜자 11.3만 명(누적)   | · 자산형성 수혜자 15만 명(누적)  |

출처 : 관계부처합동(2023). 『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2024-2026)』, p.60.

# I. 2024년 저소득 정책 변화

‘24년 긴급복지사업의 주요 변화는 위기사유 확대(전세사기 피해)와 보장성 강화

- ▶ 이 중에서 2024년에 변화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완화임<sup>1)</sup>
  - 대상자 선정기준: 생계급여(30%→32%), 주거급여(47%→48%) 선정기준 완화
  -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: 중증장애인부터 완화
    -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, 생계급여는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. 반면,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존재해 저소득층이지만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
    - 특히, 2024년 1월 기준 전체 수급자의 42.1%가 65세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,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요함<sup>2)</sup>
    -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
  -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: 다인·다자녀가구,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
  -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보장성 강화: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최저교육비 인상

## 2024년 긴급복지사업은 전세사기가 위기사유에 포함<sup>3)</sup>

- ▶ 긴급복지사업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춰 위기사유를 변경하는데, 2024년에는 전세사기가 위기사유에 포함됨
  - 긴급복지사업은 예를 들어, 주소득자의 상실,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임. 이에 긴급복지사업 사업안내에는 다양한 위기사유들이 제시되어 있음
  -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3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상실이 중요한 위기사유였으나 환경변화에 맞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제외되었고, 전세사기가 위기사유에 포함됨
- ▶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생계지원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급여수준을 32%로 인상함
  -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75%,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과거 4인가구 기준 4,050,723원에서 2024년 4,297,434원으로 246,711원 증액
  - 보장성과 관련된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, 급여 수준도 기존 기준중위소득 30%에서 32%로 인상함

1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24.1.3). “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 21만 3천 원 오른다.”.

2) 2024년 1월 기준 전체 수급자는 2,559,422명,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1,076,566명으로 42.1%를 차지함(복지로 복지통계. <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ga/sociGuaStat/SociGuaStatDetailframe.do?datsNo=7&datsCI=1012&datsCICrit=WS>. 2024.2.19. 검색)

3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(2024.1.11.). “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.”.

# I. 2024년 저소득 정책 변화

‘24년 저소득정책의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은 완화되었지만 보장성 확대는 제한적임

## 전반적으로 대상자 확대에는 의의가 있으나 보장성을 확보하진 못함

- ▶ 이번 정부의 핵심적인 복지이슈 중 하나가 약자 복지로 「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」에도 저소득정책 변화가 주요내용을 차지하고 있음
  -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「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」에 의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사회보장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으며, 「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(2024-2028)」은 ‘약자부터 두터운 복지’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
  -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: 누구도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그간 개인적 어려움으로 여겨졌던 고립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하여 고립된 사각지대의 복합적 어려움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<sup>4)</sup>
- ▶ 중점과제로는 ①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, ②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, ③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가 제시됨<sup>5)</sup>
  -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: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, 노인빈곤 완화 지원, 장애인 소득돌봄 보장 강화가 포함
  -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: 취약청년 사회안전망 구축,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지원, 소외된 약자 권익보호 지원 강화
  -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: 노동시장 지속 참여 촉진, 노후소득체계 내실화,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속지원 강화
- ▶ 중앙정부 정책 기조와 경제위기 상황으로 2024년 저소득 정책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나 보장성 확대는 제한적임
  - 『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』과 『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』에 의하면, 생계급여 대상자가 3년간 21.4만 명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있음. 또한 긴급복지사업에서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%에서 32%로 높였으나 급여지급 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음
  -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져 지속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필요함
  -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, 긴급복지사업의 급여수준이 인상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음. 그러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보장성이 낮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, 교육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

4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[https://www.mohw.go.kr/gallery.es?mid=a10607030000&bid=0003&tag=&act=view&list\\_no=378847](https://www.mohw.go.kr/gallery.es?mid=a10607030000&bid=0003&tag=&act=view&list_no=378847)).

5) 관계부처합동(2023). 『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(2024-2028)』. p.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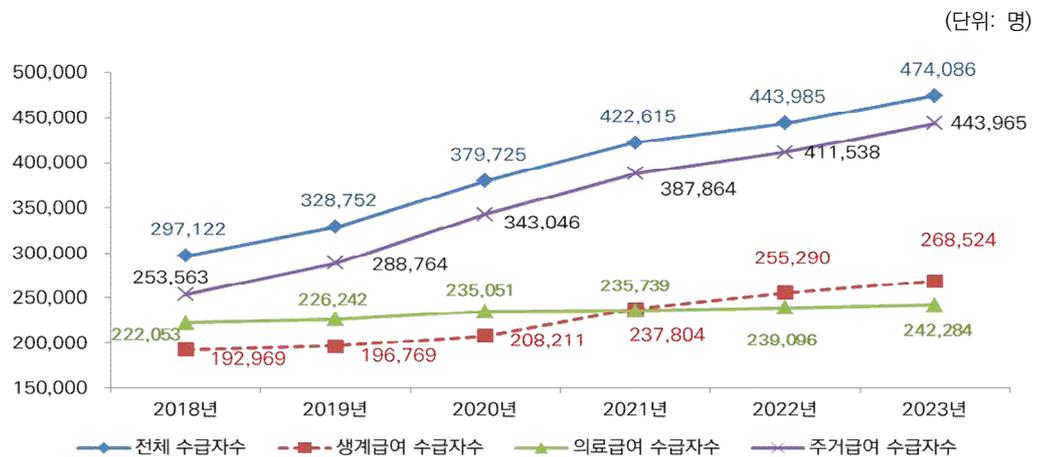
## II. 변화된 정책과 경기도의 영향

###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기도 사각지대 감소

2018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'22년 경기도 비수급빈곤가구는 167.7만 가구로 추정

- ▶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변화를 살펴보면, 경기도 내 수급자가 2018년 대비 2023년 1.6배 증가하였음
  - 2018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297,122명이었고, 이는 2023년 474,086명으로 증가하였음. 특히, 주거급여 수급자수의 증가가 두드러져서 2018년 253,563명이었던 것이 2023년 443,965명까지 증가함
  - 생계급여 대상자는 2018년 192,969명에서 2021년 237,804명, 2023년 268,524명으로 나타남
    -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2021년부터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 대상자수가 적음

〈그림 1〉 경기도 2018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(전체, 생계·의료·주거급여)



자료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별 수급자수(중복허용). 복지포털 복지통계(<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ga/sociGuaStat/SociGuaStatDetailframe.do?datsNo=7&datsCI=1012&datsCICrit=W.S>). 2024.2.19. 검색

- ▶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확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경기도의 비수급빈곤가구는 167.7만 가구로 나타나고 있음<sup>6)</sup>
  - 2022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해 경기도 비수급빈곤가구 규모를 살펴본 결과,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0.6%인 35.1만 가구로 나타남
  -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내 가구는 2.8%인 167.7만 가구로 나타남
    - 소득인정액(소득, 재산의 소득환산액, 가구 특성에 따른 공제 등)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소득자료만 활용한 비수급 빈곤가구보다 규모가 작음
    - 한국복지패널조사 중 경기도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것이며 복지패널에서 산출한 비수급빈곤가구 비율을 주민등록가구에 적용해 산출된 규모임

6) 성은미·김형선·박예은(2023). 『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대응』. 경기복지재단.

## II. 변화된 정책과 경기도의 영향

2024년  
기초생활보장제도  
변화에 따라  
경기도 비수급빈곤가구가  
최대 103.6천 가구  
감소할 것으로 예상

- ▶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경기도 내 비수급빈곤가구가 최소 88.9천 가구에서 최대 103.6천 가구 감소할 것으로 보임
  -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(30%→32%)로 48.8천~56.9천 가구가 신규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, 생계급여 수급 비율이 현재 3.7%에서 최대 4.6%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<sup>7)</sup>
  -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(47%→48%)로 40.1천~46.7천 가구가 신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, 주거급여 수급 비율이 현재 5.3%에서 최대 6.1%까지 높아질 예정임

〈표 2〉 경기도 생계급여·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변화에 따른 대상자 규모 추계

(단위: 가구, %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증가하는 가구수 |        | 수급가구수   |         | 선정기준 상향후 수급 비율 |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| 최소       | 최대     | 최소      | 최대      | 현재 수급비율        | 최소   | 최대   |
|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32%로 상향 | 48,826   | 56,899 | 266,526 | 274,599 | 3.7%           | 4.5% | 4.6% |
|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48%로 상향 | 40,079   | 46,707 | 355,648 | 362,276 | 5.3%           | 6.0% | 6.1% |

\*주: 최소기준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가구수, 최대기준은 행정통계를 활용한 가구수임.  
 생계급여 수급 가구수=217,700(2023.10월 기준), 전체 가구수=5,927,794(2023.10월 기준)  
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%~48% 가구를 대상으로 추계한 수치임  
 자료: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활용(17차 웨이브).  
 출처: 성은미 외(2023). 『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대응』. 경기복지재단.

- 2024년 생계급여,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, 88.9천~103.6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됨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,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통한 지원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감소 효과가 발생

〈표 3〉 경기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대상자 규모 추계

(단위: 가구)

|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32% |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생계급여 기준           |     | 주거급여 기준 |     | 증가하는 수급가구수 |
| 중위소득 기준 32%       | 최소* | 48%     | 최소* | 88,905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| 48%     | 최대  | 95,532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최대  | 48%     | 최소  | 96,978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| 48%     | 최대  | 103,606    |

\*주: 최소기준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가구수, 최대기준은 행정통계를 활용한 가구수임  
 생계급여 수급 가구수=217,700(2023.10월 기준), 전체 가구수=5,927,794(2023.10월 기준)  
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%~48% 가구를 대상으로 추계한 수치임  
 자료: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활용(17차 웨이브)  
 출처: 성은미 외(2023). 『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대응』. 경기복지재단.

7) 한국복지패널 2022년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 규모를 추계하였으며, 구체적인 추계 방식은 성은미 외(2023). 『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대응』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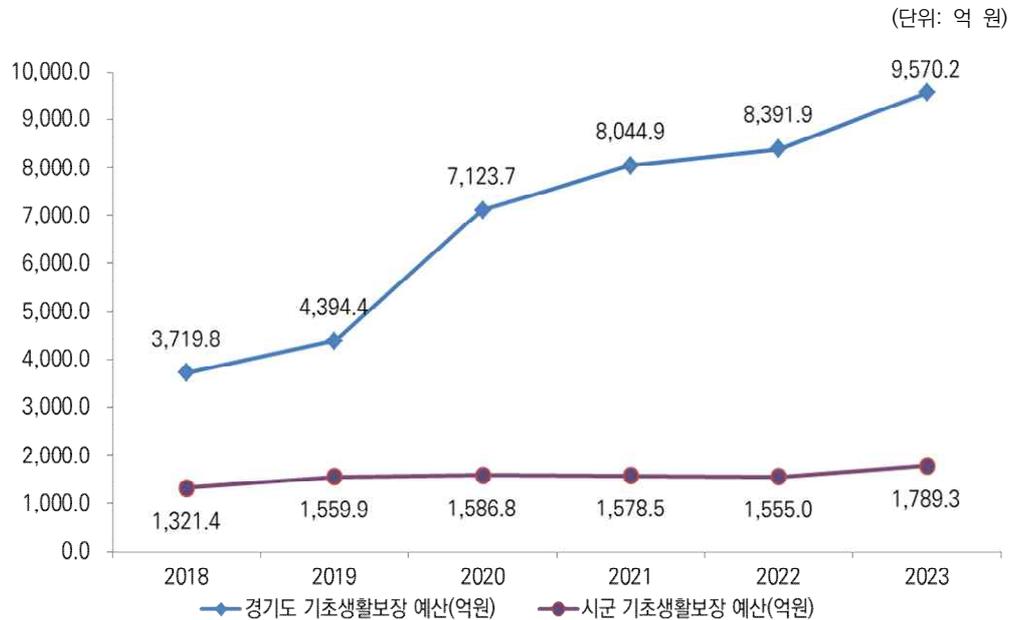
## II. 변화된 정책과 경기도의 영향

중앙의 정책변화에 따라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288억 원~335.7억으로 예상

### 대상자 확대는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및 행정적 부담으로 직결

- ▶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, 동시에 시군과 도의 재정 및 행정적 부담으로 연결됨
- ▶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18년 대비 2023년 2.6배 증가하였고, 시군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.4배 증가하였음
  -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18년 3,719.8억 원이었던 것이 2023년 9,570.2억 원으로 증가하였음. 또한 시군 기초생활보장 예산 역시 2018년 1,321.4억 원에서 2023년 1,789.3억 원으로 증가함

〈그림 2〉 경기도 2018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예산 및 경기도 부담분



자료: 연도별·세부사업별 세출현황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)  
지방재정365(<https://www.lofin365.go.kr/portal/LF3120202.do>, 2024.2.19. 검색).

- ▶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 확대로 이미 예산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2024년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288억 원~335.7억 원, 시군은 143.5억 원~167.3억 원으로 나타남
  - 제도 확대는 예산 증가로 연결되어 2024년 생계급여,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에 따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재정은 3,962억 원~4,617억 원으로 나타남
  -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에 따라 필요한 재정은 경기도 143.3~226.5억 원, 시비는 96.8억 원~112.8억 원으로 나타남

## II. 변화된 정책과 경기도의 영향

〈표 4〉 경기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

(단위: 억 원)

| 제도 변화 기준    |     |         |    | 생계+주거급여 증액 예산 |       |       | 생계급여 증액 예산 |      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생계급여 기준     |     | 주거급여 기준 |    | 총액            | 경기도비  | 시비    | 경기도비       | 시비    |
| 중위소득 기준 32% | 최소* | 48%     | 최소 | 3,962.0       | 288.0 | 143.5 | 194.3      | 96.8  |
|             |     | 48%     | 최대 | 4,175.2       | 303.5 | 151.2 | 194.3      | 96.8  |
|             | 최대  | 48%     | 최소 | 4,404.0       | 320.2 | 159.5 | 226.5      | 112.8 |
|             |     | 48%     | 최대 | 4,617.2       | 335.7 | 167.3 | 226.5      | 112.8 |

\*: 최소기준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가구수, 최대기준은 행정통계를 활용한 가구수임

\*\*: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평균 생계급여액은 456,228원, 주거급여는 2024년 1인, 2급지(경기도) 기준 268,000원을 기준으로 예산 산출

출처: 성은미 외(2023). 『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경기도의 대응』. 경기복지재단.
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로 177명~206명의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필요

▶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는 대상자 지원,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지원 필요성으로 연결되는데, 현재 경기도의 경우 읍면동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복지대상자수가 780명에 달하는 수준임

- 시군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873명, 읍면동은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780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. 시군 규모별로 살펴보면, 인구 50만 미만인 18개 시의 경우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복지대상자는 840명에 달하는 상황임<sup>8)</sup>
- 김희성 외(2022)에서 제시한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적정 복지대상자수는 시군 722명, 읍면동 747명인데, 현재 경기도는 이를 초과한 상황임

〈표 5〉 경기도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수

(단위: 명)

| 구분          | 현황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적정 복지대상자수 |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      | 시군청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읍면동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시군청                   | 읍면동 |
|             | 기존 복지대상자  |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|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| 기존 복지대상자* |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| 정원 1인당 복지대상자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31개 시군 총계   | 3,156,857 | 3,617      | 873          | 3,403,998 | 4,367      | 780          | 722                   | 747 |
| 인구 50만 이상 시 | 1,842,085 | 2,079      | 886          | 1,982,569 | 2,630      | 754          | 890                   | 680 |
| 인구 50만 미만 시 | 1,236,782 | 1,416      | 873          | 1,337,101 | 1,592      | 840          | 680                   | 820 |
| 인구 5만 이상 군  | 59,924    | 90         | 666          | 64,586    | 115        | 562          | 450                   | 570 |
| 인구 5만 미만 군  | 18,066    | 32         | 565          | 19,742    | 30         | 658          | 340                   | 450 |

\*: 복지대상자는 기타복지 1, 기초생활수급자 1,484, 차상위급여는 1,457명으로 간주해 계산한 것임(읍면동만 적용)

출처: 김희성 외.(2022). 『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실태조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전달체계 강화방안연구』. 보건사회연구원. pp. 277; 279~291에 제시된 복지대상자수 중 경기도만 추출해 재계산한 수치임

▶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적정 복지대상자수가 초과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증가로 필요한 사회복지공무원은 177명~206명으로 나타남

- 이미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복지대상자가 초과된 상황에서 수급가구의 증가는 업무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. 이에 증가하는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전체 177명~206명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

8) 복지대상자수는 기타복지,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급여를 모두 합한 값임

## II. 변화된 정책과 경기도의 영향

정책변화보다 경제위기에 따른 위기가구 증가로 긴급복지사업의 확대 준비 필요

###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 변화보다 경제위기에 따른 위기가구 증대에 대한 대비 필요

- ▶ 경기도는 중앙정부 긴급복지와 별도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고,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중앙정부 긴급복지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중앙 긴급복지를 지원받은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
  -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은 2006년부터 운영되는 저소득, 위기가구를 단기간 지원하는 정책임. 경기도의 경우에는 2008년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도입해 운영(초기 도입 당시 무한돌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운영)

〈표 6〉 중앙정부 긴급복지, 경기도형 긴급복지 공통점과 차이점

| 구분   | 중앙정부 긴급복지                | 경기도형 긴급복지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득기준 | 기준 중위소득 75%              | 기준 중위소득 100%          |
| 급여   |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 등       |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간병비 |
| 공통점  | 선지원 후심사,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 지원 |                       |

- ▶ 2024년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의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이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, 인력적 측면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
  -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되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서 지원받던 대상자가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 대상자로 편입됨. 그러나 위기가구의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위기가구는 다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자로 선정됨
  -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되더라도 이미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해당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지 않음
- ▶ 정책변화보다는 경제위기에 따른 위기가구 증가로 긴급복지사업의 대상자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련한 준비가 필요
  - 코로나19의 후폭풍, 고금리 등 경제여건 악화로 위기가구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. 지난 14일 부천에서 고독사 사건이 발생하였는데<sup>9)</sup>, 이와 같은 위기가구 증대는 인력 및 재정부담 증가로 연결
  - 2024년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은 전국 110,113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1,141.2억 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, 2023년 긴급복지 결산금액인 1,073.9억 원보다 673억 원 증액
  -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2024년 26,836명을 대상으로 278.6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. 이는 2023년에 비해 20억 증액된 수치임

9) 연합뉴스(2024.2.14.). "아파트에서 썩은 냄새가...부천 아파트서 모녀 숨진채 발견".

경기도 및 시군 부담  
완화를 위한 노력과  
더불어 위기의  
장기화·만성화 등  
현실을 반영한  
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 
개선 및 운영 필요

####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및 인력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

- ▶ 저소득정책 변화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부담이 증대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, 중앙정부에 대한 개선요구가 필요
  -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예산부담이 증대하고, 필요 인력도 증대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, 시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
  - 더불어 중앙정부에 예산부담 완화, 필요인력 확충을 건의하고,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,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
- ▶ 시군 부담 증가가 비수급빈곤층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
  - 일정 정도 경기도에 재정적, 인력적 부담이 되더라도 사각지대 감소, 위기가구 지원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
  - 『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』에 의하면, 향후 생계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%까지 상향되고,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%까지 상향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운영기반 마련이 필요
  -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시군의 재정적, 인력적 부담문제가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지, 비수급빈곤층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 모니터링 필요

####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보장성 강화와 유연한 제도운영

- ▶ 코로나19의 후폭풍,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중요함
  - 중앙정부 긴급복지사업,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모두 일시적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, 실제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, 반복되기 때문에 지원기간이 긴 상황임
  - 이에 제도악용을 막기 위해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실업과 폐업, 화재, 폭력, 전세 사기, 위기 청소년 등과 같은 위기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
- ▶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긴급통합지원을 적극 확대
  - 위기사유가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히 소득 및 재산기준을 넘어서 가구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.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맞춤형 서비스 및 급여 제공을 위한 긴급통합 지원급여를 운영 중
  - 다만,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시군이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